

## 제17장 투명성

### 제17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,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가.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, 또는
- 나.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

### 제17.2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,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<sup>1</sup> 보장한다.

2. 가능한 경우, 각 당사국은,

- 가.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. 그리고
- 나. 적절한 경우,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
### 제17.3조 재심 및 불복 청구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, 사법·준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, 행정집행을 맡은

---

<sup>1</sup> 인터넷 또는 인쇄된 형식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.

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,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.
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, 그리고
- 나.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, 또는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

3.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규정된 불복 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,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제1항에 언급된 결정이 이행되고, 그 결정이 그 부서 또는 당국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

#### 제17.4조 행정절차

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, 공평하며,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7.2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,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,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,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해당 문제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
- 나. 시간, 절차의 성격,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 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, 그리고
- 다.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

#### 제17.5조 통보 및 정보제공

1. 한쪽 당사국이 현행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 협정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에 달리 상당히 영향을

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,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 현행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

2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모든 현행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.

3.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보, 요청, 정보 또는 답변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18.4조(접촉선)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을 통하여 전달된다.

4.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에 적절히 통보된 때에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가 제3항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.

5.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보, 정보 또는 답변은 그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.